

#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1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9. 11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조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안 제37조제3항제5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37조제3항제5호 중 “기획”을 “공공사업의 기획”으로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7조제3항제5호 중 “기획”을 “공공사업의 기획”으로 수정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7조(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 운영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</p>	<p>제37조(공공건축가 운영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----- ----- <u>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한 기획</u> ----- -----</p>	<p>제37조(공공건축가 운영 등)</p> <p>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공공사업의 기획</u> ----- -----</p>

##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 제목“(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 운영 등)”을“(공공건축가 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공사업 또는 마을단위의 사업”을 “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”으로, ““공공건축가” 또는 “마을건축가””를 ““공공건축가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”을 “등 또는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”으로, “공공건축물의 기획 및”을 “기획 및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공공건축에 대한 기획”을 “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공공사업의 기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”로 한다.

2.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·「도시개발법」·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·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·도시개발사업·빈집정비사업·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)의 수립 자문

#### 4.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

제37조제5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마을건축가의”를 “공공건축가의”로, “마을건축가는”을 “공공건축가는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 제목 “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의 해촉)”을 “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”로 한다.

제39조의 제목 “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의 업무 원칙)”을 “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공건축가·마을건축가”를 “공공건축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「도시개발법」·「도시재정비  
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 
주거환경개선사업·재개발사업  
· 재건축사업·도시개발사업  
등)의 수립 자문

3. (생략)

<신설>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
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 
및 설계에 대한 자문

④ 마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 
각 호와 같다.

1. 마을단위 건축·공간환경 관련  
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
2. 현장 조사를 통한 마을단위 마  
을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정책사  
업 발굴
3. 마을의 공공·민간사업 건축·  
공간환경분야 코디네이터 역할  
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
4. 집수리 지원, 빈집개선, 자율주  
택정비사업 등 마을의 민간 건

「도시개발법」·「도시재정비  
촉진을 위한 특별법」·「빈집  
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 
례법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  
업·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·  
도시개발사업·빈집정비사업·  
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)의 수립  
자문

3. (현행과 같음)

4.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  
화 진흥에 관한 교육

5. -----  
----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  
한 공공사업의 기획 -----  
-----

<삭제>

축행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  
괄 기획 또는 코디네이터 역할  
수행

5. 지역커뮤니티 향상 및 건축문  
화 진흥에 관한 교육

⑤ 시장은 공공건축가·마을건축  
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 
있다.

⑥ 시장은 마을건축가의 활동에  
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 
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 
으며,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 
마을건축가는 활동내역 등을 시장  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8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  
가·마을건축가의 해촉) 시장은  
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·  
마을건축가가 제18조의2에 해당  
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 
할 수 있다.

제39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  
가·마을건축가의 업무 원칙) ①  
서울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·  
마을건축가 등 민간전문가(이하  
이 조에서 '민간전문가'라 한다)는  
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

④ ----- 공공건축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----- 공공건축가의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공공  
건축가는 -----  
-----.

제38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  
가의 해촉) -----  
----- 공공건축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9조(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  
가의 업무 원칙) ① -----  
----- 공공건축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-----  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